

#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8년 2월 19일

제안자 : 김춘식의원의 7인

## 1. 수정이유

-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위원수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
- 제9조 ③항의 규정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"45인이하"를 "15인 이상 45인이하"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 "15인이하"를 "6인 이상 15인이하"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를 기하도록 함.

## 2. 수정 주요골자

- 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③항의 규정에 있어서
  -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 45인이하 ⇒ 15인이상 45인이하
  -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 15인이하 ⇒ 6인이상 15인이하로 함.

##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제③항중 “45인이하의”를 “15인이상 45인이하의”로 “15인이하의”를 “6인이상 15인이하의”로 한다.